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7. 12 선고 2022가단2407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3나62074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7. 12 선고 2022가단240715 판결

전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성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유미

변론 종결2023. 6. 14.

판결 선고2023. 7. 12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9. 1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

계약을 금 15,000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2.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는 2016. 2. 18. D 주식회사와 사이에, 14,000,000원을 만기일을 2019. 3. 5., 정상금리를 12.3%, 연체금리를 최고 19%로 정하여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이에 기한 채권을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.

나. C는 2017. 9. 13. 피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7. 9. 5.자 매매(이하 '이 사건 각 매매'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.

다. 원고는 2020. 7. 14.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, 2020. 9. 2.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라. 2022. 5. 23.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15,268,774원이고, 그 중 원금은 8,645,955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, 을 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C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에 대하여

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, 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

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,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 판결).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, 2023. 4. 25.를 기준으로 한 C의 부동산등기기록(소유권)은 존재하지 않으나, 이 증거만으로 C가 이 사건 매매 당시인 2017. 9. 5.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, 달리 이 사건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C의 적극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.

원고는, '위 사실조회결과의 기준 일자에 유의하는 등 증거를 재검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. 9. 5.를 기준으로 한 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'는 이 법원의 2023. 6. 28.자 석명준비사항에 대하여, '위 사실조회회신은 2023. 4. 25.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거나,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에 대해 존재 내역 없음이라는 회신이 도착한 것이다'라고 주장하나, 원고의 2023. 4. 19.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에는 사실조회사항의 요지가 'C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'이라고 되어 있을 뿐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, 사실조회결과¹⁾에는 조회기준일이 2023. 4. 25.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(원고의 위와 같은 답변내용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하더라도 무자력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). 결국 이 사건 매매로 인해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또는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이유 없다고 판단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정중건

별지

현황도 나타내는 자료라면,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는 조회 내용에 표시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위 자료에는 '시스템 조회결과 없음'이라고 기재되어 있다.